

국내의 농장동물복지 도입 동향



◎농장동물복지 개념 정의

동물복지란 인간의 영리를 위한 동물의 이용을 반대하는 동물권리 운동에 대한 대안으로 도입된 개념으로 인간의 필요를 위해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수용하는 대신 그러한 행위의 주체인 인간에게 동물 이용에 대한 윤리적(倫理的)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즉, 동물복지란 인간과 동물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인간이 동물을 이용하는데 있어 동물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윤리적 책임의 관점에서 동물에게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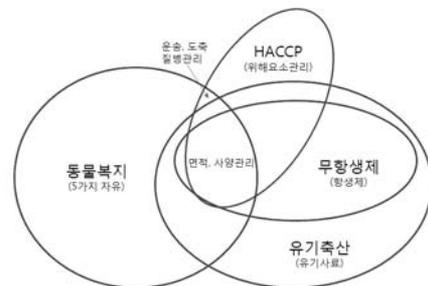
각 국가별로 그 나라가 처해 있는 경제적 조건이나 자연 환경, 소비자 및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정도에 따라 동물 복지의 개념이나 동물복지 적용 수준에 차이가 존재한다. 그렇지만 동물복지 개념에 내포되어 있는 윤리적인 책임은 동물의 이용범위와 동물들이 받는 고통의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동물복지란 일반 국민들에게 폭

넓게 알려진 일반적인 개념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반려동물(伴侶動物)을 중심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실험동물과 농장동물과 같은 산업동물에 대한 동물복지 적용 문제도 어느 정도 다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 인간권리나 인간에 대한 복지가 완전하지 못한 현실에서 동물의 복지수준에 대해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현하고 아직은 시기상조(時機尙早)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견해들은 동물, 특히 농장동물의 복지는 인간을 위한 보다 높은 수준의 환경과 식품안전성 요구 충족을 위해 필요한 개념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1-1. 농장동물복지의 범위】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농장동물에 “친환경축산물인증제”,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 “환경친화축산물장지정제”, “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system, HACCP)” 등의 제도들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렇지만 그림 <1-1>과 같이 이들 제도들은 본격적인 농장동물복지 개념과는 거리가 있다. 즉, 축종별 사육면적이나 사양관리 방법, 운송 및 도축관리, 질병관리 등에서 기존 제도와 동물복지는 일부분 연결되는 개념들이 적용될 뿐 그 철학적인 출발배경은 틀리기 때문에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수 없다.

◎농장동물복지 연구 필요성

국제적으로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및 영국, 호주 등의 선진 농업국가 중심으로 농장동물에 대한 동물복지 적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계동물보건기구(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 OIE)와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FAO) 등도 농장동물복지 향상 노력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국내 축산업은 기술향상, 생력화(省力化), 시설현대화 등 생산성과 효율성 중심으로 발전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 공급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국내 농업생산 성장의 원동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성 향상과 현대화 이면(裏面)에는 축산업의 규모화와 공장형 집약식 가축사육 등으로 인한 분노와 악취, 질병발생, 항생제 남용, 축산물 안전성 논란 등의 부정적인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공

장식 축산의 경우 사육환경을 동물의 생리구조에 적합하도록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에서 규격화된 사육조건에 동물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동물의 건강에 바람직한 수준의 최적조건을 보장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다양한 문제들의 발생과 소비자들의 높아진 의식수준, 동물복지의 국제 규범화 등의 최근 추세에 농장동물복지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련 국내 연구가 현재까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국내 축산업에서 농장동물에 대한 복지제도가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낮은 수준의 제도적 뒷받침과 이해당사자들의 정보 부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국가차원에서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내용의 상당부분이 반려동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농장동물에 대한 구체적 동물복지 실현내용은 그리 많지 않다.

사실 법률을 통한 농장동물복지의 보장과 증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연구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이해당사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한국 실정에 맞는 농장동물복지 달성 목표 수준 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러한 목표 수준이 구체화되어 있지 못하며, 국내 관련 산업계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필요요건에 대한 기준도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농장동물복지를 보장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국내 농장동물복지 유사 정책과 제도

환경문제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

이 증가하면서 친환경 축산과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축산업등록제에서의 사육면적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 환경친화축산 농장 인증, HACCP 등의 정책과 제도가 일부 도입되었다. 이미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이들 정책 중 일부는 축종별 사육면적이나 사양관리 방법 등과 관련해서 농장동물복지와 일정 부분 관련이 있다.

1) 축산업등록제

2002년 12월 개정되어 2003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된 “축산법”은 축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친환경축산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지원 및 지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농가와 생산단체간의 정보교류 확대 등 선진 축산 체계 구축을 위해 시행되었다.

축산업등록제의 등록대상은 한·육우 300㎡, 젖소 100㎡, 돼지 50㎡, 닭 300㎡ 규모 이상 농가이다. 축산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호에 따라 등록된 농가의 과도한 밀집

사육을 억제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361호”로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오리의 사육기준은 다음과 같다.

오리의 수당 가축사육시설 면적은 산란용 오리의 경우 0.333㎡, 육용 오리는 0.246㎡(무창 또는 고상식 시설의 경우는 0.15㎡)이다.

오리의 경우 육성오리 2수, 새끼오리 4수를 각각 성오리 1수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성장단계별 구분은 산란용 오리의 경우 3주령 미만을 새끼오리, 3주령~18주령 미만을 육성오리, 18주령 이상을 성오리로, 육용 오리는 3주령 미만을 새끼오리, 3주령~6주령 미만을 육성오리, 6주령 이상을 성오리로 한다.

2)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는 친환경축산을 확산시키기 위해 2009년부터 도입한 정책으로 축산업등록자 중 축산물 HACCP 지정을 받고 “친환경농업육성법” 제



【표 2-1. 유기축산물 인증요건 중 사료 및 영양관리 내용】

- (1) 유기축산물의 생산을 위한 가축에게는 100퍼센트 유기사료를 급여하여야 한다. 다만,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기준에 따라 유기사료를 급여할 수 있다.
 - (가) 건물(乾物 : dry matter)을 기준으로 유기사료를 반추가축의 경우에는 85퍼센트 이상, 비반추가축의 경우에는 80퍼센트 이상 급여
 - (나) “유기축산물(전환기)”로 표시하려는 축산물의 경우 건물을 기준으로 유기사료를 반추가축은 45퍼센트 이상, 비반추가축은 40퍼센트 이상 급여(무농약농산물 또는 그 부산물로 유래된 사료를 급여하는 경우에는 건물을 기준으로 반추가축은 60퍼센트 이상, 비반추가축은 55퍼센트 이상 급여)
- (2) 유기축산물 생산과정 중 심각한 천재·지변, 극한 기후 조건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른 사료급여가 어려운 경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일정 기간 동안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를 일정비율로 급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 (3) 반추가축에게 사일리지만 급여해서는 아니 되고, 비반추가축도 가능한 조사료 급여를 권장한다.
- (4) 유기사료 및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를 일정비율 급여할 경우에도 유전자변형농산물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로부터 유래한 것이 함유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 범위 안에서 비의도적인 혼입은 인정될 수 있다.
- (5)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단미 및 보조사료는 별표 1 제1 호나목의 자체기준과 같다.

(...일부 생략...)
- (7)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신선한 음수를 상시 급여할 수 있어야 한다.

【표 2-2. 유기축산물 인증요건 중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내용】

- (1) 가축의 질병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하여 예방하여야 한다.
 - (가) 가축의 품종과 계통의 적절한 선택
 - (나) 질병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육장 위생관리
 - (다) 비타민 및 무기물 급여를 통한 면역기능 증진

- (라) 지역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이나 기생충에 저항력이 있는 종/품종의 선택
- (2) 가축의 기생충감염 예방을 위하여 구충제 사용과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백신을 사용할 수 있다.
- (3) 법정전염병의 발생이 우려되거나 긴급한 방역조치가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필요한 질병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4) (1) 내지 (3)에 따른 예방관리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가축은 해당 약품 휴약기간의 2배가 지나야 유기축산물로 인정할 수 있다.
- (5) 약초 및 천연물질을 이용하여 치료를 할 수 있다.
- (6) 질병이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을 정기적으로 투여하거나, 생산성 촉진을 위해서 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호르몬 사용은 치료목적으로만 수의사의 관리 하에서 사용할 수 있다.
- (7) 가축에 있어 꼬리부분에 접착밴드 붙이기, 꼬리 자르기, 이빨 자르기, 부리 자르기 및 뿔 자르기와 같은 행위는 일반적으로 수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안전 또는 축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하거나 가축의 건강과 복지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다.
- (8) 생산물의 품질향상과 전통적인 생산방법의 유지를 위하여 물리적 거세를 할 수 있다.

【표 2-3. 유기축산물 인증요건 중 운송·도축·가공 과정의 품질관리 내용】

- (1) 생축의 수송은 조용하고 상처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전기자극이나 대증요법의 안정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가축의 도축은 스트레스와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오염방지 등을 위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 (3) 도체 및 원유 등 당해 축산물은 가공공정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농가에서 직접 가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축산물가공장에서 가공되어야 하고, 유기적 방법으로 생산된 원유는 별도 구분하여 집유 및 가공처리를 하여야 한다.

- (4) 생축의 저장 및 수송시에는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 (5) 유기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 동물용의약품이 잔류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의사 관리 하에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이를 허용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공전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 이하하여야 한다.
- (6) 유통시 발생할 수 있는 유기축산물의 변성이나 부패방지를 위하여 임의로 합성물질은 첨가할 수 없다. 다만, 물리적처리나 천연제제는 유기축산물의 화학적 변성이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
- (7) 유기축산물 포장재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가급적 생물분해성, 재생품 또는 재생이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7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축산생산물인증(유기 축산물·무항생제 축산물)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농가당 지급한도액은 연간 최고 2,000만 원이고 지급기간은 최초 지급연도로부터 3년간이다.

또한 이와 병행해서 친환경축산농장 지정을 받은 농장에게는 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의 20%를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한다.

“친환경농업법육성법”에 의한 친환경축산생산물인증을 위해서는 일반원칙, 사육장 및 사육조건, 자급사료 기반, 가축의 선택, 번식방법 및 입식, 전환기간, 사료 및 영양관리,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운송도축·가공과정의 품질관리, 가축분뇨의 처리 등에 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제도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제도는 가축의 관리, 환경보전 또는 악취저감관리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에 대한 규칙”에 근거한다.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준 중에는 가축의 사육밀도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이를 위해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의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을 위한 가축사육밀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표 2-11).

◎농장동물복지제도 국내 도입 동향

우리나라는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생명의 존중 등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1991년 “동물보호법”을 제정했다.

이후 2007년 1월 26일 기존 “동물보호법”을 전문 개정하여 법(26조), 시행령(11조), 시행규칙(26조) 및 6개의 관련고시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의 주요내용은 적용되는 동물을 기준으로 나눌 경우, 동물학대행위금지 등 모든 동물에 적용되는 일반규정, 반려동물의 등록, 판매업·장묘업 등록제,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윤리제도, 농장동물 복지에 관한 규정 등으로 구성된다.

이중 농장동물복지와 관련된 내용은 법 제6조의 적절한 사육·관리, 제8조의 동물 운송, 제11조의 동물 도살방법, 제12조의 수술(거세, 제각, 단미) 등이 있다.

한편 2010년 8월에 새롭게 입법예고된 “동물보호법” 개정 법률안의 경우 농장동물복지와 관련하여 국제 기준

집중탐구

국내의 농장동물복지 도입 동향

【표 2-4. 환경친화축산농장 가축 사육밀도 기준】

축종	성장 단계별 또는 종류별	체중 및 단위	축사시설면적 (㎡/두(수))	축사형태 기준
한·육우	육성(비육)우	400kg이상	7.0	깔짚우사
	번식우	400kg이상	9.2	깔짚우사
젖소	육성우	450kg이하	6.4	깔짚우사
	건유우	두당	8.3	후리스틀우사
			13.5	깔짚우사
	착유우	두당	8.3	후리스틀우사
16.5			깔짚우사	
돼지	분만돈	두당	3.9	분만틀 돈사
	육성(비육)돈	60kg 이하	0.6	깔짚·슬러리돈사
	비육돈	60kg 이상	0.9	깔짚·슬러리돈사
	임신(후보)돈	두당	3.1	깔짚·슬러리돈사
	웅돈	두당	9.7	깔짚·슬러리돈사
닭	육계	수당	0.042	케이지
			0.046	깔짚평사(무창)
			0.066	깔짚평사(개방)
	산란성계	수당	0.042	케이지
			0.11	깔짚평사
	산란육성계	1.5kg이하	0.025	케이지
			0.066	깔짚평사
	중계	2.5kg이하	0.11	깔짚평사

주 : 축종별 환산기준의 경우 성우 1두=육성우 2두(송아지: 6개월령 미만, 육성우: 6~14개월령, 성우: 14개월령 이상), 성계 1수=육성계 2수=병아리 4수(토종 닭은 산란계 평사기준), 육성돈 1두=자돈 3두(자돈: 1개월령 미만)임. 기타 사육밀도 환산과 관련된 사항은 축산법에 의한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따름.

에 부합하고 국내 현실에 기반을 둔 농장동물복지 가이드라인 개발을 전제로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를 신설해 “농장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인증제”와 “동물복지형 축산식품 표시제” 도입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농장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인증제”의 주요 내용은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동물

을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고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축산농가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동물복지형 축산식품 표시제”를 위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기준, 절차 및 인증농장의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개정 경과를 반영한 하위법령(대통령령, 부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축종별(산란계와 돼지)로 인증 기준을 마련한 후 법제화하고 인증제도 시행을 위한 인증 고유마크와 로고 개발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에 있다.

국내 농장동물복지 가이드라인 개발은 현재 TF와 협의회 구성을 통해 진행 중으로 산란계 농장과 돼지 농장에 대한 초안 작업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또한 OIE의 동물복지 가이드라인과 연계하여 기존의 “동물운송세부규정”과 같은 동물 육상운송 및 인도적 도축에 대한 복지지침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을 바탕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